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원고·신청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청구내용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이유로 위탁자 및 당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순차 말소등기를 청구함.
4.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5. 향후대책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분쟁으로서 당사가 관련 분쟁에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사로서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로 이전하면 되므로 당사에 대한 패소부담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3자로의 처분은 불가능함.
6. 제기·신청일자	2016.01.04.
7. 확인일자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